# 전자금융 이체한도 추가약정서 (하루 동안 이체한도 늘리기 서비스용)

#### 제1조(목적)

본 약정서는 '전자금융거래신청서'에 추가하여 은행에서 정한 전자금융 이체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, KB국민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전자금융 이체한도에 관해 추가약정을 함으로써 이체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## 제2조(한도증액 신청)

- ① 이용자는 <별표1>의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고, 모바일앱(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"KB스타뱅킹"을 말합니다.)에서 이 약정서에 동의를 한 후 한도증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.
- 1. 증액할 이체한도의 종류(1회 이체한도, 1일 이체한도)
- 2. 증액 후 이체한도 금액
- 3. 한도증액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 중 하루 동안 증액된 이체한도가 적용될 날짜(이하 "한도증액기간"이라 합니다.)
- ③ 이 약정서에 따라 이용자가 증액할 수 있는 최대 이체한도는 <별표2> 증액 가능한 최대 이 체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④ 제2항의 한도증액기간이 경과하면 이체한도는 한도증액 전의 이체한도가 적용됩니다.

#### 제3조(서비스 종류)

본 추가약정 체결은 계좌이체 거래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 내합니다.

#### 제4조(한도증액 신청의 해지 및 제한)

- ① 이용자가 이 약정서에 따라 한도증액 신청을 했더라도, 이용자는 한도증액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모바일앱 또는 영업점에 소정의 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직접 한도증액 신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용자가 이 약정서에 따라 한도증액 신청을 했더라도, KB국민은행은 보안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의 한도증액에 의한 이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(보안장치) 본 추가약정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이 정한 보안장치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6조(한도증액 후 이체)

이용자가 한도증액기간 중에 이 약정서에 따라 증액된 한도 내에서 이체거래를 하는 경우, 이용자는 은행에서 정하는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, KB국민은행은 이용자에게 추가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## 제7조(이용자의 의무)

본 추가약정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은행으로부터 이체한도 증액에 따른 위험과 책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, 부정사용(보안장치 비밀번호 노출 등)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종 접근매체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
## 제8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

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「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」이 적용됩니다.

## 부 칙

#### 제1조 시행일

이 약정서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

## <별표1>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이체한도

구분		보안등급별 이체한도	
		보안1등급	보안2등급
이용자 (개인)	1회	1억원	1천만원
	1일	5억원	1천만원

## <별표2> 증액 가능한 최대 이체한도

구분		증액 가능한 최대 이체한도	
이용자 (개인)	1회	10억원	
	1일	20억원	